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20. 12. 31.>

사격장 [ ]폐업 [ ]휴업 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7일

신고인	법인명	
	사무소 소재지 (전화번호:)	
	대표자 (생년월일:)	
	주소	
	허가번호 제 호	허가 연월일 년 월 일
폐업·휴업 사유		
폐업·휴업 예정연월일	년 월 일	

「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경찰청장 경찰서장 귀하

구비서류		수수료
	1. 사격장 설치허가증 1부 2. 보유하고 있는 총기·석궁 등에 대한 처리계획서 1부	없음

유의사항

◈ 처리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보유하고 있는 총기·석궁·실탄 현황
2. 총기·석궁·실탄의 양도, 폐기, 보관 등 처리 방법
3. 총기·석궁·실탄의 처리 기간 등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

처 리 절 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